

「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 : 강승수 의원 외 10인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종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원활한 경관업무를 추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5조)
-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-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5조)
-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~제22조)
-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~제24조)
-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~제32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경관법」, 「경관법 시행령」

6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종전 조례를 보완하여 원활한 경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,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고,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심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상위법인 「경관법」이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조례 정비가 지연됨에 따라 장기간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음. 앞으로는 상위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